

제주사회적경제기업 <마을기업 사업신청 컨설팅> 참가기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주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의 이해 및 마을기업 지정 희망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<마을기업 사업신청 컨설팅>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2년 3월 2일

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

I 개요

- **사업명** : 2022 마을기업 사업신청 컨설팅
- **사업기간** : 2022.03.02.(수) ~ 2022.11.30.(수) 9개월간
- **사업대상** : 예비, 신규(1회차), 재지정(2회차), 고도화(3회차) 사업신청 희망 법인·기업
- **지원내용** : 사업신청 컨설팅(본 사업 지원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사업신청 지원)

□ 사업신청 자격

○ (마을기업 기본요건) 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, 지역성 모두 충족

구 분	마을기업 요건
공동체성	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(법인)에 출자하여야 함 -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, 법인 출자금과 마을기업 출자금 총액 동일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(출자자)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-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,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

구 분	마을기업 요건
	⑤ 마을기업 회원(출자자) 5명 이상(대표자 포함)이 시·도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입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⑥ 모든 회원(출자자)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(동일한 비율)하게 출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-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% 이하하여야 하며,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* 모두의 지분 합이 50% 이하하여야 함 * (특수관계인)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, 형제·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%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%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
공공성	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특히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③ 마을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④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여야 함 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
기업성	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*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-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법인 설립 이후 마을기업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운영 실적이 있거나 마을기업 회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-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·영여조합법인 등 법인이어야 함 -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자격이 부여됨(운영실적이 있어야 함) * 단, 예비마을기업의 경우,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 - 법인이 아닌 경우와 법인(예비마을기업) 설립·운영 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<u>시도로 추천 불가</u>
지역성	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·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(유·무형의 인적·물적 자원)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, 추진하여야 함 ④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- 마을기업 차부담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(법인 출자금 포함)하여야 함 - 마을기업 회원의 70%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하며, 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

구 분	마을기업 요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지역의 범위 (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촌지역은 '읍·면'을 기본으로 함 ○ 도시지역은 '구(자치·행정구)'를 기본으로 함 ○ '구' 가 없는 시(도농복합시, 행정시 등)는 '동' 지역 간 연계 가능 * 다만, 사업성격·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·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* 지역주민 비율(70%) 산정방법 : 6인 출자 시 지역주민 5인 이상(4.2명→5명), 8인 출자 시 지역주민 6인 이상(5.6명→6명)

예비 마을기업

- 마을기업 설립의사가 있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 및 공동체
 - ※ 공모 신청 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, 시도지사는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마을기업 기본요건(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, 지역성) 충족
 -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(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 70% 이상)
 - ※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'제주특별자치도 내 읍·면·동'이 기본이며, 10인 이상 출자 권장

1회차(신규) 마을기업

-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, 상법에 따른 회사,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,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
- 마을기업 기본요건(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, 지역성) 충족
 -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(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 70% 이상)
 - ※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'제주특별자치도 내 읍·면·동'이 기본이며, 10인 이상 출자 권장
- 2023년 마을기업 공고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

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(예비마을기업의 경우,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5개월 이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약정 체결하고 운영한 경우를 말함)

- 시·도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입문교육(7시간)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
- 입문 교육 : 2022년 4, 7, 10월 시행예정

2회차(재지정) 마을기업

-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,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
 - 신청 이전에 전문교육(4시간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
 - 전문교육 : 2022년 4월 ~ 10월(6회 예정)
- 마을기업 기본요건(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, 지역성) 유지
 -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(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 70% 이상)
 - ※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'제주특별자치도 내 읍·면·동'이 기본이며, 10인 이상 출자 권장

3회차(고도화) 마을기업

- 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
 - 사전 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라,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'전문교육(4시간)'을 이수한 경우 우대(가점 3점)
- 마을기업 기본요건(공동체성, 공공성, 기업성, 지역성) 유지
 -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, 출자자가 5인인 경우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 (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 70% 이상)
 - ※ 지역의 범위는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'제주특별자치도 내 읍·면·동'이 기본이며, 10인 이상 출자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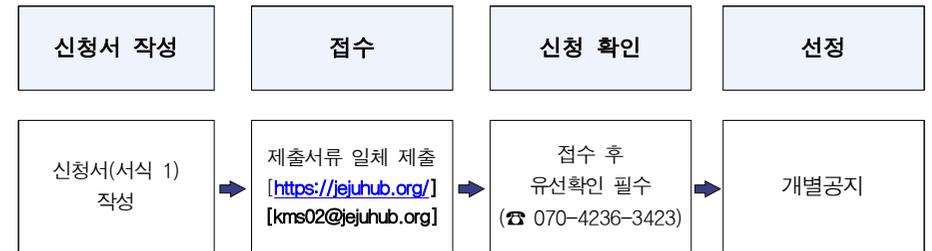
□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

-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
-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
-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*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
 - * 토지 용도변경,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상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
-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 사업에서 지정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
-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
-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
-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
-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(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)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
-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

II

모집 및 신청

- **모집대상** : -(예비·1회차) 마을기업 지정 희망 법인·단체 회원
-(2~3회차·우수·모두爰) 도내 지정 마을기업 회원
- **모집규모** : 9개 기업(우선 등록순으로 마감)
- **모집기간** : 2022.03.02.(수) ~ 2022.10.02.(일) 24:00까지
※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.
- **접수방법** :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(kms02@jejub.org)
- **접수절차** :



□ 제출서류

- ① **참가신청서 1부.** (사업비 사용 계획[별지 서식 1호] 포함)
- ② **1차·2차·3차 모집대상 필수 서류**
 - 법인 등기부등본 1부.
 -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- 전년(2022년)도 재무제표 1부.(금년 법인 설립 시, 생략)

- 제출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제출서류 미비,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기업에 있음
- **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(마을기업팀 김명석 매니저 ☎ 070-4236-3423)**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, 소명서류를 위조·변조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
-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, 사업선정 이후라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